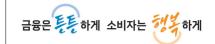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10.10.(목) 조간	배포	2024.10.8.(화)		
담당부서	SK텔레콤 비전PR팀	책임자	팀 장	허 광	(010-6359-0145)
		담당자	매니저	지호준	(010-4056-6016)
	KT 기업가치홍보팀	책임자	팀 장	박창규	(010-6437-3829)
		담당자	과 장	유석준	(010-9888-8497)
	LG유플러스 언론홍보팀	책임자	팀 장	박성민	(010-8927-3919)
		담당자	책 임	도민선	(010-3437-7665)
	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	책임자	국 장	곽범준	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	이수인	(02-3145-7180)

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습니다.

- SKT·KT·LGU⁺ 각 사별로 '24.12월부터 순차 시행 -

Ⅰ. 추진 배경

- □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*,
 - * 「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(행정지도)」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(위탁)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음
 - **통신채권에** 대해서는 **소멸시효가 완성**되더라도 **소비자**를 보호할 수 있는 **장치가 없었습니다**.
- □ 이에,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(SKT, KT, LGU⁺)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Ⅱ. 주요 내용

- □ '24.12월*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**도 하지 않습니다.
 - * SKT는 '24.12.1일부터, KT 및 LGU⁺는 '24.12월말부터 시작할 계획
 - ** 현재도 금액에 상관없이 매각을 하고 있지 않음
 - 통신요금을 **3년 이상 연체***한 **개인 및 개인사업자** 중
 - * 3년 이상 연체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(예 : '22.1월 ~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'22.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)
 -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**연체된 모든 회선**의 **통신요금***을 합하여 **30만원 미만****이면 **추심금지 대상에 해당**됩니다.
 - *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, 컨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
 - ** 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(5~6만원) 및 유선서비스 요금(3~4만원)과 통신요금 연체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고려

Ⅲ. 기대효과 및 소비자 유의사항

- □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**평범한**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 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**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**를 위해 **지속적**으로 **노력**하겠습니다.
- □ 다만,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**연체한 통신** 요금*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 - * 통신사의 안내 및 홈페이지 등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 및 금액 확인 가능
 - 또한, 금융·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 위원회의 '금융·통신 통합채무조정'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